

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(제4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1년 2월 1일 00시부터

8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0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 위생과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-10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1호(2008.04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(2009.1.0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96호(2010.8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17호(2011.

7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74호(2012.10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27호(2012.11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0호(2013. 3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3호(2013. 9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73호(2016. 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59호(2016.11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80호(2017. 5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60호(2017.10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8호(2018. 8. 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51호(2019.10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59호(2020. 4.2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4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사업종류: 재개발정비사업

○ 사업명칭: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법인명: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

○ 소재지: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길 94, 1층(신림동)

○ 대표자

- 성명: 조합장 유병철

- 주소: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5길 17(신림동)
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○ 위치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 일대

○ 면적: 224,773.5㎡

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○ 착수예정일: 2024년 10월

○ 준공예정일: 2027년 9월

5. 사업대행개시결정일 : 2021. 2. 4.
 6. 사업대행자
 ○ 사업대행자 : (주)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최윤성
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(역삼동)
 7. 대행사항
 1) 정비사업비 조달
 2) 사업 전반 관리
 3) 협력업체의 선정, 계약체결, 용역비 관리 등
 4) 자금관리

- 5) 기술검토
 6) 기타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상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위임하는 업무 수행
 8. 기타사항
 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, 자금의 차입,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. 끝.

공 고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-182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에정사항 공시송달 공고

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4일

6. 공고대상 :

업종	신고번호	업소명	영업자	소재지
휴게음식점	2017-0094012	GS25관악남현점	김** 외 1명	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7길 2 1층 (남현동)

7. 공지사항

- 위 공시송달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, 2021년 02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중 미제출시 의견이 없으므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 -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제 목 :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 2. 공고기간 : 2021. 02. 04.(목) ~ 2021. 02. 19.(금)
 3. 게시장소 : 구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
 4. 말소예정일자 : 2021. 02. 22.(월)
 5. 처분 근거법규 : -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제4항,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-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

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(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)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(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)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8. 문 의 처 :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생과 (☎02-879-7258)